

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2차 본회의 (2020.06.11.)

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이 용 섭)

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5월 29일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20년 0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0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」는 평창군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수, 읍·면 및 리·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,
-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(139개)통합, 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(의료보험완전통합)으로 부칙<제5854호, 1999. 2. 8.> 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에 따라 「의료보험법」 및 「국민의료보험법」은 각각 폐지되어 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」는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단일보험자 의료보험관리체계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1999. 2월 제정되면서 부칙으로 「의료보험법」 및 「국민의료보험법」을 폐지함에, 「의료보험법」을 근거로 실시되어 온 「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에위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기존조례는 오랜 기간 사문화된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위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.